"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기준 지침 시달

화물운송(지입)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최신판례를 토대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

전결 08/13

협조자

시행 산재보상정책과-3072 (2018.08.14.)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어진동) / www.moel.go.kr

전화 전송 / 비공개(5)